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유공자 비방·모욕 정보 등에 대한 조치 권한 신설 등〉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85, 2218386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56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개요	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독립유공자 비방·모욕 정보 등에 대한 조치 권한 신설 등	5

I. 개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6. 4. 16.
- 3) 회부일 : 2026. 4.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김용만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4인
- 2) 제안일 : 2026. 4. 23.
- 3) 회부일 : 2026. 4.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6. 4. 16.
- 3) 회부일 : 2026. 4.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독립유공자 비방·모욕 정보 등에 대한 조치 권한 신설 등

□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목적의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등 독립유공자를 조롱하는 영상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 정보의 삭제 요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3(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8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565호)

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
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
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
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
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
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보훈부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4.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44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의 이용

2.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u>보상</u>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u>보상, 예우 등에</u>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14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u>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가는 그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²⁾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영상 등이 제작되고, 이러한 영상, 이미지 등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게시·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전한 보훈의식 및 역사인식을 저해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손상하게 함에도 이러한 영상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³⁾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조롱·모욕하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요청,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김준혁의원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을 저해하는 정보’로, 김용만의원안은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정보’로 각각 규정하고,

○ 제재조치의 상대방과 수단으로, 김준혁의원안은 정보의 게시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고인을 소비하는 AI, 막을 수 있을까?”(<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10700001>), 경향신문, 2026. 3. 31.(최종 방문일: 2026. 6. 23.); “‘뭔데 이 아저씨’ 김구까지 희화화...선 넘은 독립운동가 조롱 논란”(<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29>), 주간조선, 2026. 4. 10.(최종 방문일: 2026. 6. 23.) 등 참조.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용만의원안은 그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한 자에게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김용만의원안은 부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금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준혁의원안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김준혁의원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반면, 김용만의원안은 사전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1] 각 개정안의 내용

구분			김준혁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의무규정			×	○(금지규정)
제재조치규정	제재대상	정보	독립유공자 비방 목적 +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정보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작· 유포 또는 유통 · 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을 통하여 제작·유포 또는 유통
	절차·권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상대방 · 수단		·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 삭제 요청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 (제작·유포 또는 유통한 자) 중지·시정 명령
	불이행시 강제수단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후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는 것을 예우의 기본 이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를 비방하거나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삭제·차단하여 그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국가보훈 및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건전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규제하고자 하는 표현에 대한 명확성 측면, 법 집행체계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⁵⁾를

4)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기본권주체는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의 표출 등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통하여 규제하려는 표현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되는데,⁶⁾

개정안은 제한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주관적인 법해석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이 해당 법률조항을 통하여 규제하려는 표현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김준혁의원안은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독립유공자를 비방할 목적의 정보로서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 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로, 김용만의원안은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정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는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조롱”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조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법조문에서 “조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김용만의원안의 경우 국가보훈부 의견과 같이 “조롱”을 삭제하게 된다면 규제 대상 표현의 범위가 “모욕하는 정보”에 한정되고, 이 경우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6)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헌법재판소

벗어난 정도의 표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은 규제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⁷⁾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여부와 함께 개정안을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표현의 범위까지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 저해’, ‘조롱’, ‘모욕’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율 범위 및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모욕”은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될 수 있고,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보충적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⁸⁾가 있다는 점,

“조롱”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⁹⁾,

7) 대법원 2026. 8.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벌 조항에 대한 법해석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다만, 위 결정에서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부정적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다소 거친 신조어 등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수반된 비판도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각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회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¹⁰⁾ 등에서 규제 대상 정보의 내용으로 “조롱” 또는 “희화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 규정을 기준으로 심의 및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¹⁾¹²⁾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되, 독립유공자 존중 정신을 저해하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표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한 법문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제한되는 표현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행할 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권한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법 집행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전반적 체계 및 개정안에 따른 수행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10)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11) “조롱”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조롱하는 발언’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는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구합53754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 등.

12) 다만, “조롱”의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 등을 요청하는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국가보훈부는 모욕·조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시정조치와 관련된 업무(신고 접수, 시정조치 및 이의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미비하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법에는 금지규정만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집행체계도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³⁾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부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¹⁴⁾와 중복되는

13)

측면이 있어 이중규제, 규제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하여,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선거 관련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정보 등에 대하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의 권한을
해당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는 점¹⁵⁾도 고려될 필요가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5)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김준혁의원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재조치를 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등과 관련하여 유공자 등록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상이정도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표현의 제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훈심사위원회는 현 인력 및 위원 구성으로는 전문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심의·의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려는 취지의 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해당 정보의 게시·유통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개정안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참고로,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는 대상 집단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례로는,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¹⁶⁾ 그 정보의 유통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하는 구조임.¹⁷⁾

[표 2] 독립운동가 모욕 등 행위 처벌에 관한 개정안

개정안	내용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허성무의원안)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처벌 등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안)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모욕한 자 처벌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안)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한사자모욕죄 신설

- 1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 물, 인쇄물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김용만의원안은 제재조치 근거 외 부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금지규정을 별도로 규정(안 제9조의2제1항)하고 있는 반면, 김준혁의원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제재조치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김용만의원안과 같이 부작위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에는 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정보의 제작·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만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제공자 등에게 그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